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경과

의안 제650호로 2025년 11월 7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가로수 관련 행위 등에 관한 계획은 도시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는 특별시나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 함(안 제4조)
- 나.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2025. 3. 6.)된 것임.
  - 조례 제정 이전에도 영등포구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최근 수립연도는 2021년 6월임.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행정계획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임.
- 한편,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도지사·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대한 국회 1)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조항의 취지는 “도시숲등에 관한 계획이 도시 단위로 수립 · 시행되는

---

1)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것이 효율적이므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나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수립·시행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는 조문 제목을 기존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함. 대신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함.
- 그 밖에 별표(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신청서) 및 제2호서식(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서) 신설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가로수 관련 기본계획을 특별시 또는 시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구 단위에서는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통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